2021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사전참가신청 QR코드

2021년 5월 31일 (월) 오후 2시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채널명: 함께걸음)

개회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성재 상임이사**
축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강용현 고문 변호사**
사업 소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김영연 간사**
발표1	2021년도 장애 인권 **디딤돌** 판결 |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발표2	2021년도 장애 인권 **걸림돌** 판결 | 법무법인 디라이트 **표경민 변호사**
발표3	2021년도 장애 인권 **주목할** 판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정규 변호사**
지정토론 1	장애인차별구제소송에서의 '임시조치'문제 |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
지정토론 2	장애 관련 판례의 흐름과 동향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종합토론 1	사법 모니터링과 장애인단체의 역할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
종합토론 2	사법 모니터링과 장애인단체의 역할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
종합토론 및 폐회	

주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후원 bkl 법무법인(유한)태평양 bkl 재단법인 동천

2021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시 간	구 분	내 용
14:00~14:10	개회사	**이 성 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상임이사)
	축사	**강 용 현** (법무법인(유한)태평양 고문 변호사)
	사업 소개	**김 영 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간사) - 사업 및 판결문 선정과정 소개
1부 발표		
14:10~14:50	발표1	**이 주 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2021년도 장애 인권 **디딤돌 판결**
	발표2	**표 경 민**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 2021년도 장애 인권 **걸림돌 판결**
	발표3	**박 정 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변호사) - 2021년도 장애 인권 **주목할 판결**
Tea Break (10분)		
2부 토론		
15:00~15:10	지정토론 1	**최 정 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 장애인차별구제소송에서의 '임시조치' 문제
15:10~15:20	지정토론 2	**염 형 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장애 관련 판례의 흐름과 동향
15:20~15:30	종합토론	**이 찬 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 사법 모니터링과 장애인단체 역할(1)
15:30~15:40	종합토론	**김 혜 영**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총장) - 사법 모니터링과 장애인단체 역할(2)
15:40~	**질의응답 및 폐회**	

목 차

발표

발표 1 2021년도 장애 인권 디딤돌 판결 ····· 4

이주언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발표 2 2021년도 장애 인권 걸림돌 판결 ····· 17

표경민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발표 3 2021년도 장애 인권 주목할 판결 ····· 24

박정규 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토론

지정토론 1 장애인차별구제소송에서의 '임시조치' 문제 ····· 33

최정규 변호사 (원곡법률사무소)

지정토론 2 장애 관련 판례의 흐름과 동향 ····· 41

염형국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종합토론 사법 모니터링과 장애인단체 역할(1) ····· 50

이찬우 사무총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종합토론 사법 모니터링과 장애인단체 역할(2) ····· 55

김혜영 사무총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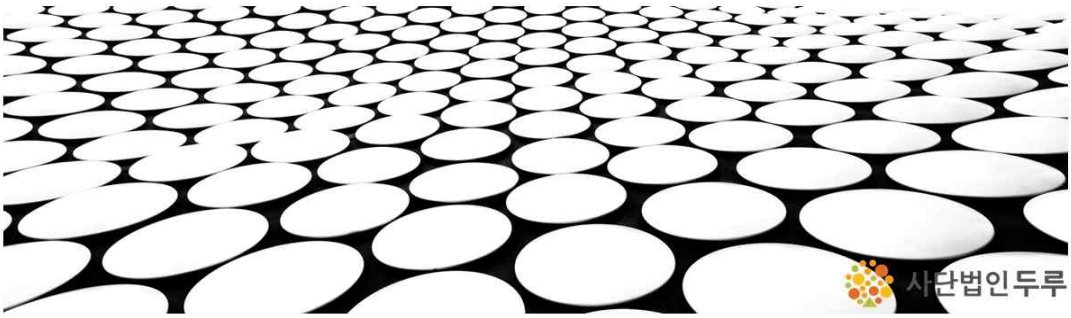
<발 표>

2021년도 장애 인권 디딤돌 판결

이 주 언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2021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1

2021년 디딤돌 판결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대법원 2016두50907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수원고등 2019누13363 불합격처분취소

대전고등(청주) 2019누142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대구고등 2019누506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대구지방 2019구합22042 해임처분취소



1.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않은 장애유형이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에 해당한다면 장애인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대법원 2016두50907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 원고는 운동 틱과 음성 틱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뚜렛증후군으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주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왔고, 10년 넘게 약을 복용하였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앉아서 일을 할 수도 없는 등 오랜 시간 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아 왔다.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행정청은 원고의 뚜렛 증후군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15가지의 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하였다.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않은 장애유형이라 하더라도 장애인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1심 원고 패소
- 2심 원고 승소
- 3심 원고 승소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히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호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유형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의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가 있는 사람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안면장애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심장장애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간장애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호흡기장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루·요루장애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뇌전증장애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장애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 신체표현 · 자기조절 · 사회적응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 · 행동 ·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제1심

-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장애인에 대하여 일시에 동일한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여야 할 국가의 구체적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장애인의 복지를 (...) 입법자는 그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
- 한정된 재원을 가진 국가가 장애인의 생활안정의 필요성과 그 재정의 허용 한도를 감안하여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의 내용 자체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

대법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의 정의, 제2항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제정될 시행령의 내용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한편 행정입법에 관한 재량의 한계를 부여한 규정

어느 특정한 장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할 뿐 아니라(...)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최대한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법조문에 갇히지 않고 당사자가 겪는 사회 참여의 어려움까지 폭넓게 살핀 재판부.
형식적인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는 장애인 인권을 인정한 판결!

장애인권리협약

-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

이후의 변화!

장애유형별 확대질환 장애인정기준	
장애유형	주요 내용
지체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있는 사람
시각장애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복시가 있는 사람
안면장애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경우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간장애	Child-Pugh 평가 정도 B이면서 ①난치성 복수, ②간성뇌증 2회 이상, ③간신증후군, ④정맥류 출혈, ⑤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중 하나의 합병증이 현재 있는 사람
장루 · 요루 장애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어 요역동학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 배뇨근 수축이 없거나 현저히 감소된 사람
정신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양성증상 또는 음성증상이 지속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에 따른 기분 · 의욕 · 행동 및 사고장애의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 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도움이 수시로 필요한 사람

이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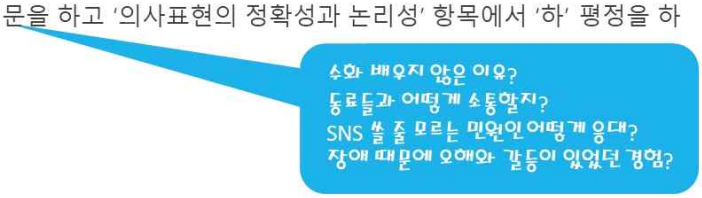
2021. 4. 20.자 뉴시스 기사
https://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57



2021. 4. 19.자 비마이너 기사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73

2. 공무원 면접 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고 불합격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 판시한 사례

- 수원고등 2019누13363 불합격처분취소
- 원고는 심한 정도의 청각장애를 가진 공무원 시험 응시자
- 필기 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을 거쳐 불합격 처분을 받음
- 면접시험 편의제공 기준 등 미리 공고X, 위원들에게 선입견과 편견 줄 수 있는 장애 내용 사전고지, 시험시간 연장 X, 충분한 속기 능력을 보유한 의사전달 보조원 배치 등 X
-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하고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에서 '하' 평정을 하여 '미흡' 등급을 부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할 편의제공 내용 공고X

- 면접시험은 절차를 흠결한 하자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실제로 원고가 이로 인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면접시험 절차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고는 신청할 수 있는 편의제공 사항과 기준 등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면접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 공개경쟁임용시험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접시험 절차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과 평가의 전제가 되는 절차적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 편의제공 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지 아니하였고 (...) 면접절차에는 장애인복지법령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청각장애 2급, 대화와 수화 불가능" 사전고지

- 사전고지 조항의 취지는 면접위원들에게 장애 자체의 특성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개별 장애인 응시자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면접시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한 것
- 수화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은 원고의 장애에 부수한 현 상태를 설명하는 것

- 조항의 취지는 면접위원이 장애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응시자에게 차별적인 질문을 하거나 응시자의 장애종류 및 정도에 관하여 선입견과 편견 가지는 것 사전 방지
- 청각장애인들 수어 외에도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보청기, 필담, 구화)을 사용 (...) 원고의 장애특성을 '대화 및 수화 불가능'이라고만 안내한 것은 면접위원들에게 '수화를 못하여 의사소통 할 수 없다'는 선입견과 편견 갖게 할 수 있음

정당한 편의제공?

- 전담보조요원 배치, 면접실에 노트북과 블루투스 키보드, 대형모니터 설치. 전담보조요원은 응시자 교육, 평정표 및 사전조사서 작성, 면접실 안내, 면접위원 질문내용 입력 등 의사소통이 필요한 모든 절차에 도움을 줌
- 면접시험 시간을 충분히 연장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일반 공무원을 원고의 전담요원으로 배치하여 문자통역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시험시간 연장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원고는 15-20분 내에서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조급함 속에서 최초&추가 면접시험을 봄. 원고가 위와 같은 압박감 속에서 시험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면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험환경을 제공받았다고 할 수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차별?)

-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함
- 장애에 관한 질문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원고가 장애를 극복한 경험이나, 직무에서 요구되는 여건이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것이므로, 그 내용 자체로 차별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재량권 일탈・남용? (차별?)

-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는 물어보지 않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으로서 장애인과 장애가 없는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 장애에 대한 질문은 면접위원의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면접위원에게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애인 응시자를 당황하게 하거나 위축되게 할 수 있으며 다른 질문에 할애할 시간을 빼앗기 때문에 장애인 응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근로지원인 지원 등 제공받을 수 있고, 편의제공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

시사점

- 여주시는 재면접 전에 면접위원들에게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
- 정당한 편의 제공 + 질문과 답변을 통한 심사에서의 차별 예방
- 손해배상액 실질화하여 차별 개선 노력 이끌어내야

사단법인두루

3. 건강한 사람이 입대 후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입대 전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처분을 위법하다 한 사례

- 대전고등(청주) 2019누142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A는 신체검사 '1급' 판정 받고
  - 2006년 육군 입대. 군생활 적응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흉통과 어지러움을 호소, '신체화 장애' 진단.
  - 2007년 6월부터 환청, 피해망상 등 호소
  - 2007년 8월 군의관 소견 '경도의 우울, 불안, 피해사고 호소 등으로 4주 이상의 경과관찰 약물치료 필요'
  - 2008년 3월까지 별다른 정신질환 치료 받지 못한 채 전역
  - 2008년 10월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지속적으로 입원 반복하여 치료
  - 2016년 복막염으로 사망
  - 2017년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받음

3. 건강한 사람이 입대 후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입대 전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처분을 위법하다 한 사례

- 1심 원고 패소
- 2심 원고 승소

제1심

- 진료기록감정촉탁의
  - 망인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수 있고, 스트레스도 조현병 발병에 기여하는 복합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나, 스트레스에 의해 조현병이 발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질적, 유전적 취약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 망인의 조현병과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

제2심

"의사의 의견을 무작정 수용하기보다, 입대 전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판부"

'군 입대 전 별다른 정신질환이 없었던 사람이 입대 후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행하여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본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조현병이 발병하였다면 조현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망인이 입대 전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음에도 재판부에서 망인이 입대 전 받았던 정신과 진료는 입대 이후 발병한 조현병과 별개의 사유라고 판단

진료기록감정의의 판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망인의 조현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부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당사자의 입장에서 조현병 발생의 인과관계를 실질적으로 판단

4. 일하면서 기존 장해가 심해졌지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을 장애 차별이라 판시한 사례

- 대구고등 2019누506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원고는 1991년 4월 장애 판정 2010년 1월부터 하지 제4급 제4호로 진단되어 장애연금 수령
- 산재 발생하여 오른쪽 다리 7cm 단축 장애, 오른쪽 고관절 및 무릎관절 운동제한에 따른 기능 장해 발생
- 산재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신청
- 장해등급 불리하게 받은 것에 대한 소송제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다가 산재를 당했는데 비장애인은 장해급여를 받고,
장애인은 산재 이전에 장해가 있었으니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명명한 재판부!

- 제1심 원고 승소
- 제2심 원고 승소

- 산재보험법과 장애인복지법은 그 입법취지와 보상목적,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상금액이 모두 다르다.
- 원고가 그 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판정을 받았다거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 그에 상응하는 기존 장해를 인정하는 것은 기존 장해가 없던 사람이 원고와 동일한 부위에 업무상 상해를 당하여 원고와 동일한 장해가 남은 경우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될 여지가 있다

5.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2042 해임처분취소
- 원고는 지방공무원. 자택에서 우울증, 환청 등의 증상을 겪다가, 귀신을 떼어 내야 한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가위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말리던 원고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힘
- 가정보호사건 송치 → 불처분 결정
-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이유로 해임처분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난무한 가운데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멈춰세운 판결"

- 환청,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해임 사유 될 수 없다 (...)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앞으로 공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추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면 휴직 또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될 여지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바로 직권 면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휴직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휴직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비로소 직권 면직이 가능하다고 판시
-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환청,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정을 징계 절차에서 감경 요소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

디딤돌 판결을 이끌어내주신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변호사,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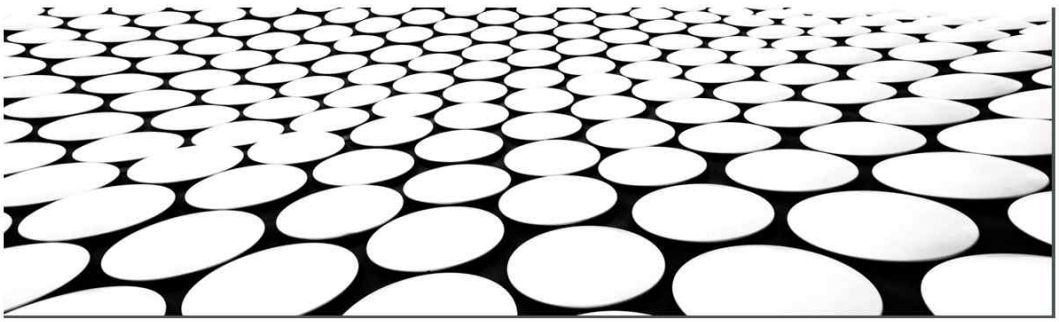
매해 디딤돌 판결을 소개해주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에도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두루

2021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감사합니다.
JELEE@JIPYONG.COM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발 표>

2021년도 장애 인권 걸림돌 판결

표 경 민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D'LIGHT

2021 장애인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걸림돌 판결

표경민 변호사

D'LIGHT

2021 장애인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걸림돌 판결

1. 군 복무 중 청각장애를 입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여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2. 장애인등 편의법 상의 건축물 구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축사에 부과된 벌점을 취소한 사례
3. 장애인용 콜택시 이용자를 특정 유형의 장애인에게만 한정시킨 성남시 조례로 인해 뇌병변 장애인이 장애인용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4. 장애로 인해 '직접 경작' 요건을 갖출 수 없는데도,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D'LIGHT

걸림돌 판결 ①: 대전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10557 판결

사실관계 및 법원판결



원고: 3급 청각장애인, **피고**: 충남동부보훈지청장

2002. 3. 11. 입대
2002. 8. 13. 난청호소, 국군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
2003. 3. 12. 이병으로 의병전역
2017. 10.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비해당 결정**

1심 법원: 피고의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피고 항소

2심 법원: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입대 후 지속적으로 큰 소음에 노출되었음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음**. 1심 판결 취소, **원고의 청구 기각**.

3

D'LIGHT

걸림돌 판결 ①: 대전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10557

선정의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재해부상군경":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① 부친과 조부의 청력 나쁨
② 해군전공사상심사위원회 의결에 이의제기 X
③ 2019년 기준 청력보호장비 지급
④ 군의관이 병상일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4

D'LIGHT

걸림돌 판결 ①: 대전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10557

선정의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재해부상군경":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① 원고 군입대 전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검사기록 X
② 입영 당시 신체검사에서 1등급 판정
③ 군입대 후 해군 함정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훈련 받음
④ 군복무 중 상이 진단 후 의병제대
⑤ 모친은 정상적인 청력, 부친은 결과 X

5

D'LIGHT

걸림돌 판결 ②: 대전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20누10089 판결

사실관계 및 법원판결

원고: 건설사,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문턱을 두어서는 안되고, **출입문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주출입구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 등을 설치하여야 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기타 구조부를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해당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벌점 부과

'기타 구조부'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으로서 건축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것

→ 건설사 주장 인용, 벌점 부과 취소

6

D'LIGHT

걸림돌 판결 ②: 대전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20누10089 판결

선정의견

장애인 편의시설은 건물의 '구조부'가 아니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서울거리 「턱」을 없애주시오
휠체어市民, 遺書쓰고 自殺
시장판冷待
건너갈수 없는 橫斷보도
들어갈수 없는 食堂·화장실
우리가 살 땅은 어디입니까

D'LIGHT

걸림돌 판결 ③: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2. 20. 선고 2019가합404160 판결

사실관계 및 법원판결

원고: 뇌병변 장애인, **피고**: 성남시장

원고는 성남시 규칙에서 정한 '등록장애 1~2급, 지체장애 1~3급, 국가유공자 1~3급, 휠체어 이용자'에 미해당 → **장애인 복지 콜택시 사용 거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차별금지는 "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의 불평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D'LIGHT

걸림돌 판결 ③: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2. 20. 선고 2019가합404160 판결

선정의견



항소심은 성남시의 차별행위를 인정, 원심 판결 취소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②「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교통약자에 준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65세 미만자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심신 허약자 또는 병약자

"장애인 복지 콜택시는 교통약자법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에 해당하므로, 그 이용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는 장애인 복지 콜택시의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적극적 조치의 대상자에 포함된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적극적 조치의 실시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다.**

9

D'LIGHT

걸림돌 판결 ④: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누23234 판결

사실관계 및 법원판결



원고: 지체(하지기능) 5급장애인, 피고: 서부산세무서장

어머니와 동생, 매제가 원고의 땅을 경작해옴
→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 부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직접 경작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농지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법 규정의 취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10

D'LIGHT

걸림돌 판결 ④: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누23234 판결

선정의견

양도소득세 감면 목적 =
소작제도 청산, 농지이용의 비효율성 제거, 농업 • 농촌의 활성화

양도소득세 감면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의 농촌 활성화 기여도 인정할 수 있는 방안 존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였거나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
- 농지 거주, 경작 방법 관여 등 추가 요건 고려

11

D'LIGHT

Thank You

<발 표>

2021년도 장애 인권 주목할 판결

박 정 규 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21 장애인 인권
주목할 판결 선정 보고



주목할 판결 (1)-①

사실관계 :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1052)

원고는 피고의 여동생인 A의 명의를 사용하여 분양계약 등 체결.
A는 지적장애, 지능지수 44, 사회연령 7세 6개월로 고도의 지적장애에 해당.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A 명의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분양대금 등을 부담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A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피고는 분양대금 등 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라며 소송 제기.

주목할 판결 (1)-②

사실관계 :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1052)

법원은

1)원고와 피고가 A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A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2)그 과정에서 A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의한 정황이 없음

3)A가 분양계약의 체결 과정이나 '명의신탁약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도 없어 보임

원고와 A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당해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주목할 판결 (1)-③

선정의견

지적장애인인 A에게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을 거라고 판단, 명의도용 피해 상황을 명확

그러나 법원이 지적장애인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손쉽게 부정, 지적장애인의 자유로운 법률 행위가 가로막히는 결과를 초래.

지적장애인들에게 거래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등의 조력인 제도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견 등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아직까지 그와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되지 못하고 있음.

지적장애인의 명의도용 피해를 정당하게 인지한 판결임에도, 더 이상 법원의 판결로써 구제를 기대해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판결을 주목할 판결로 선정.



주목할 판결 (2)-①

사실관계 : (서울고등법원 2019노928)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혼인신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면서 혼인신고, 위력을 행사하여 장애인을 간음한 것에 대해 기소

법원은
1)피해자와 모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2)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로 약물 및 면담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당 기간 준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와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변론 내용 및 태도,

심신장애 주장 배척.

주목할 판결 (2)-②

신청의견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지적 장애 특성으로 이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요소로 판단하지 않은 점

"피해자 정도의 장애 수준이라면 혼인과 같은 중대사에 부모나 보호자의 사실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정신적 장애인이 결혼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의 사실상의 동의가 항상 필요한 것인가?

하지만 의사결정지원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 상황, 정신적 장애인의 혼인의 의사는 누가 어떻게 결정?



주목할 판결 (2)-③

신정의견

한편 법원은 범행이 조현정동장애 증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 X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이전부터 피해망상, 감정기복 등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여야, 형법 개정의 배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 주목



주목할 판결 (3)-①

사실관계 :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07947)

피고 – 뇌병변장애 5급 E 학생의 어머니 교사, 원고 – 교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 E 학생이 장애를 이유로 지속적인 괴롭힘, 학교폭력으로 신고
원고, 학폭위 회의 장애를 들먹이며 E에게 책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 결국 학교폭력사건 X

피고, 방송국에 제보, 관련한 뉴스 방영
결국 교육감,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업무 처리, 교감으로서의 역할 못함, 해임처분
원고, 피고가 허위사실을 방송국에 제보, 명예를 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담당재판부는 '제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성 등은 일응 방송사에서 판단하여 그 보도 여부를 결정
설령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보자인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

주목할 판결 (3)-②

신청의견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 따돌림 문제는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 학폭위 구성원 중에 장애아동을 대변할 X
장애학생 및 그 부모는 외로운 싸움, 최후의 수단 언론 제보 등 공론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언론사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제6조)
장애인권 침해 제보,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음
오히려 명예훼손 책임을 추궁 당함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인권침해로 인한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주목할 판결 (3)-③

신청의견

언론제보 등의 행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위법성 조각하는지) 판단 앞서, 명예훼손 행위 자체 X

원고의 학교폭력 은폐·무마, 피고가 커다란 고통, 이에 대한 구제 위하여 제보에 이른 점 충분히 고려

아쉬운 점, '설령 피고의 언론 제보행위 등이 명예훼손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란 가정적 판단을 부가하였다면,
제보행위가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회에 알리고 구제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적극 활용



주목할 판결 (4)-①

사실관계 : (대법원 2016두41071)

원고들, A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5명 간호사들 임신, 4명 심장질환아 5명 유산.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 태아의 심장형성에 장애,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 청구.
피고,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 만을 의미
원고들의 자녀는 위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청구를 거부.

주목할 판결 (4)-②

사실관계 : (대법원 2016두41071)

원심 재판부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을 간호자 본인의 질병 X

대법원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및 내용,
국가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태아의 보호 책무,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근로현장에서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선천성 심장질환이 생긴 것은 원고들에 대한 업무상 재해

주목할 판결 (4)-③

신정의견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보호 측면에서는 바람직 하지만 장애인의 권리 측면에서는 아쉬움.
질병을 가진 상태로 태어난 아이를 산재보험법상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리 태아의 권리능력 X, 하지만 개별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면..

독일판례, 산재로 인해 건강 손실을 입은 태아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 법률이 태아의 평등권 침해
이후 법에서는 태아의 건강손상도 산재보상이 적용되는 보험사고

앞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한 입법적 설계가 꼭.



주목할 판결 (5)-①

사실관계 : (대전고등법원 2019누10724)

구 장애인고용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근로자 총수의 100분 5 범위 내 '의무고용률' 이상,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

원고, 여러 병원 운영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 처분
각 병원의 독립된 사업주,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 여부는 별개로 적용, 처분부당 소제기.

주목할 판결 (5)-②

쟁점의견

기존 대판례, "사업주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 특별경우 아니면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 모든 사업장 근로자 수를 합산

재판부, 각 병원이 별도로 회계처리, 인사관리를 등을 한다는 것을 이유, 특별경우 주장 배척

쉽게 특별 경우 인정,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이를 악용하게 될 것, 규정취지 유명무실

하나의 구체적 기준 제시



<지정토론 1>

장애인차별구제소송에서의 ‘임시조치’ 문제

최 정 규 변호사
원곡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와 관련한 규정이 있다.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은 소송제기 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당사자가 그 소송기간 중에 차별을 견디는 것은 너무 가혹할 수 있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소송제기 전 또는 소송제기 중에도 장애인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2021년 4월 1일까지 법원에서 임시조치 명령이 내려진 건 1건[1]에 불과하다. 아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장애인차별구제소송에서 '임시조치'가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1) JTBC 2021. 4. 1.자 오선민 기자 보도('차별구제'법까지 만들었지만 '법원문턱'만 가면 그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15.결정 2018카합20049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A고등학교의 신입생모집(무대미술과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입시요강에서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실기고사 성적 만점(300점)의 60%(180점) 미만인 자'를 합격자 배제조건으로 규정한 것은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 행위에 해당되며 불합격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취지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임시조치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해서 판단함)

2. 장애인콜택시 탑승 관련 장애인차별구제소송[2)]

일시	내용
2019. 4. 3.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임시조치신청서 제출 (수원지방법원 2019아3340)
2019. 4. 26.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심문기일 진행
2019. 6. 19.	수원지방법원 이송결정
2019.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사건 이송
2019. 6. 28 ~ 2019. 7.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진행 중단 [사건번호(2019가합773), 재판부(민사 제3부) 지정]
2019. 7.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 다시 접수 사건번호 재부여 및 재판부 재배당 [사건번호(2019카합50157),재판부(제5민사부)]
2019. 8. 13.	심문기일 진행

가. 임시조치신청서 제출 및 이송결정(수원지방법원)

(1) 장애당사자는 2019. 4.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한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임시조치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위 임시조치신청에 대해 사건번호 2019아3340를 부여하고, 제3행정부에 배당하였다.

(2) 위 사건에 대해 2019. 4. 26. 심문기일이 지정되었고, 심문기일에 대리인이 출석하였고, 성남시장측에서는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다. 위 심문기일을 진행한 재판부는 관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성남시장측에서도 관할에 대한 이의가 전혀 없었다.

2) 걸림돌 3번 판결(장애인용 콜택시 이용자를 특정 유형의 장애인에게만 한정시킨 성남시 조례로 인해 뇌병변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당사자가 소송제기 중에 제기한 임시조치신청이다.

(3) 그런데 심문종결된 이후 재판부 주심판사로부터 사무실로 유선상 연락이 와서 관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유선상으로 설명을 하였지만 결정이 지연되었기에 2019. 6. 4.자 참고서면을 통해 서울행정법원 2012아4209 사건(시각장애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시각장애의 다양성을 고려한 선거 공보를 제공하라는 임시조치명령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사례에서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 사례)을 다시 설명하여 이 사건 관할이 행정법원 관할임을 재차 밝혔다.

(4) 그럼에도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2019. 6. 19.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이송한다”는 이송결정을 하였다.

나. 이송 후 사건진행 중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 수원지방법원의 이송결정으로 인해 위 사건은 2019.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이송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9가합773이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였지만, 2019. 7. 15.까지 재판부 배당을 지연하는 등 사건처리가 중단되었다. (통상 사건 접수된 후 1~3일 안에 재판부 배당)

(2) 대리인은 2019. 7. 17. 이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지만, 심문기일 지정 등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달 23. 민사과에 연락해 담당자와 통화화였다.

이 사건 성남지원 민사과(2019. 7. 23. 통화)에서는 “원래 사건이 이송되면 종합민원실에서 입력 후 배당을 하는 건데,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입력 자체가 안 되어 법원행정처에 요청을 했고, 조회를 통해 회신이 와서 당사

자 입력까지는 된 상태"이며 "문제는 이게 전자사건인데 전자 기록뷰가 전혀 안뜨는 상황이고, 이제 민사과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자기록뷰가 뜨지 않기 때문에 배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민사사건이 이송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전자기록뷰를 확인할 수 있고, 원활하게 배당이 되는 데 아 사건이 민사합의부로 이송된 건 처음이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라고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받았다.

(3) 그 이후에도 대리인은 성남지원 민사3부에 연락해 이 사건 진행을 독촉하였으나, 민사3부는 이 사건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였다.

다. 사건번호 재부여, 재판부 재배당 및 심문기일지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송받은 날(2019. 6. 28.)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19. 7. 31.이 되어서야 다시 사건을 접수처리하였고, 최초 부여했던 사건번호를 2019카합50157, 담당 재판부도 민사 제5부로 변경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최초로 부여한 사건번호(2019가합773)는 삭제되었고, 진정인이 제출한 2019. 7. 17.자 준비서면 또한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삭제되었다.

(2) 이 사건 다시 배당받은 민사 제5부는 2019. 8. 13. 오후 3시 20분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였다.

3. 피한정후견인 장애인의 우체국은행 이용 관련 장애인차별구제소송[3)]

일시	내용
2018년 11월 30일	소송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8가합586347
2018년 12월 4일	임시조치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미부여
2018년 12월 19일	심문기일 진행 후 임시조치결정 내려지지 않음.
2019년 8월 28일	제1심 판결선고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1059
2019년 11월 28일	임시조치신청(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 2019카합20109
2020년 5월 14일	심문기일 진행 후 임시조치결정 내려지지 않음
2020년 6월 24일	우체국 은행 예금거래 개선계획 실시

가. 사건번호 미부여, 임시조치 미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당사자는 소송제기 직후 본안사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조치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다. 임시조치신청 신청서 제출한 직후 심문기일을 한 차례 진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2019년 8월 28일 선고된 판결문의 '판결이유'에 임시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4)]시켰을 뿐이다.

---

3) 법원의 한정후견결정을 받은 피한정후견인 18명이 은행거래에 있어 대면거래가 금지되고, 무조건 후견인과 '동행'해야만 은행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우체국 은행의 조치가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진행한 소송(1심, 2심 모두 '장애인차별행위'를 인정하였고, 현재 대법원 계류 중)

4) 제1심 판결문에 포함된 임시조치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11쪽)
"원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로서 위 차별행위의 중지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전에 위 차별행위의 중지를 명할 정도의 긴급성이 보이지 않아 임시조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지연된 임시조치 결정(서울고등법원)

1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장애인차별행위 중지를 명령하였으나 피고의 항소제기로 차별행위가 중단되지 않았기에 당사자는 항소심 진행 중 후견심판 결정문상 후견인의 '동의'를 '동행'으로 해석한 차별행위라도 즉각적으로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임시조치를 재차 신청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사건번호를 별도로 부여하였으나, 6개월 후에야 심문기일을 지정하였다. 결국 심문기일 이후인 2020년 6월 우체국은행이 예금거래 개선계획을 실시함으로 인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의 실익이 없어져 당사자는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여 종결되었다.

다. 소송제기 후 1년 7개월 동안 작동되지 않은 임시조치결정

2018년 11월 30일 소송제기 후 당사자는 두 차례나 법원의 임시조치신청을 통해 장애인차별행위 중단을 요청하였지만, 우체국은행이 스스로 은행거래 개선계획을 실시한 2020년 6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그 결정은 미루어졌다. 사건번호 부여에 대해서도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고, 1심 재판부는 별도의 결정 없이 본안 판결의 내용에 임시조치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4. 법원의 임시조치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요청[5)]

5) 2019년 8월 임시조치가 지연된 부분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원지방법원 및 성남지원 등을 조사하여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하도록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임시조치명령 등 **법원의 구제조치를 정한 법 제48조는 법률제정 시점부터 규정된 것으로 2021년 현재까지 13년 동안 특별한 개정없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례에서** 수원지방법원이 신청서가 접수된 2019. 4. 3. 시점으로부터 2개월 넘게 '관할' 판단에 소비한 후 같은 해 6. 19. 이송결정을 내리는 등 이 사건이 행정법원 관할인지, 민사법원 관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2개월 넘는 시간을 소비한 점, 수원지방법원으로터 사건을 이송받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사건배당절차를 1개월 가량 지연시킨 점, **두 번째 사례에서** 사건번호 부여 등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약 1년 7개월 동안 임시조치결정을 지연시킨 점 등은 장애인차별을 본안판단 전에 신속하게 중지하기 위해 도입된 '임시조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절차 진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관할, 사건번호 부여 등에 대해 각급법원이 통일된 입장을 보이지 않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장애당사자는 피해를 보고 있다. 법원은 장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규정된 '법원의 구제조치'상 규정된 권리를 보호,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이 어느 법원(행정법원 또는 민사법원 등)에 관련 요청을 해야하는지 정확하게 공지하여 사건이 이송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관련 신청이 들어올 경우 사건번호를 어떻게 부여해야 할지를 사전에 정해 절차 지연을 방지할 의무를 다해 사법절차 및 서비스제공[6]에 있어 장애인차별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

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정토론 2>

장애 관련 판례의 흐름과 동향

염 형 국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 장애인 판례의 경향

가. 신체적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정 확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 유형을 15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뚜렛증후군으로 신제척·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아 왔음에도 행정청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원고의 장애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하였다.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하위 위임규정인 시행령에 규정된 1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는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에 반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법에 대한 해석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처분을 내리는 행정청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그 범주를 축소시키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이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이다.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나 그 보장 및 제한의 방법 등의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은 기존에 3단계에 걸쳐 15개 유형으로 확대되어 왔고, 뚜렛증후군에 대한 장애인정을 확대하는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올해 2021년 4월 시행령상의 장애범주는 그대로 두되, 기존 장애범주에 장애유형 6가지, 질환 8가지를 추가하였다.

나.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상의 차별금지에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직접차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여기서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

따라서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국가·지자체·사기업·개인을 모두 포함한다)는 채용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채용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채용면접 응시자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채용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청각장애를 가진 일반행정 장애인 전형 지원자에게 청각장애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여주시의 행정은 장애인차별임을 확인한 수원고법 판결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응하는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뿐 아니라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군,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율하고 있다. 사회 각 영역에서 장애 차별을 규율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엄격한 판단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신장애인으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로 규율되고 있다. 정신질환은 오랜 혐오의 대상이자 사회에서 제거할 대상이었다. 정신장애인은 무능력하다고 오인당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

혔다. 그런 이유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통한 ‘감금’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유일한 집단이기도 하다. 정신장애 당사자들은 그런 ‘낙인’ 때문에 사회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고, 장애등록도 하지 못한 채 숨어서 지내왔다.

그런 점에서 보훈청의 조현병 환자에 대한 보훈대상자 비해당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대전고등법원 판결과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상해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구지방법원 판결은 의미가 크다. 보훈대상자 비해당처분취소소송에서 망인이 입대 전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망인이 입대 전 받았던 정신과 진료는 입대 이후 발병한 조현병과 별개의 사유라고 판단하였고, 진료기록감정의가 망인의 조현병에 대해 '증상의 발현이 군 복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진단하였음에도 이를 근거로 망인의 조현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부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전문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현병 발생의 인과관계를 실질적으로 판단한 점도 매우 의미가 있다.

또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재판부가 공무원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유는 그 자체만으로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앞으로 공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추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면 휴직 또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될 여지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바로 직권 면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휴직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판결내용도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판결이다.

라. 장애인등편의법의 한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은 지난 199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을 3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로 한정하여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그마저도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규정하여 있고, 하위법령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시설과 권장시설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법의 한계 때문에 장애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식당 등 대중이용시설은 대부분 장애인등편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건설산업진흥법 관련 건설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건물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인 '구조부'에 장애인등편의법상 문턱, 출입문, 손잡이, 점형블럭은 포함되지 않아 그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문제 없다고 하여 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법원 판결은 장애인등편의법이 유니버설디자인법으로 전면개정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만들어주었다.

마. 지적장애인 의사능력의 딜레마

주목할 판결 ①, ②는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에 관한 판결이다. 판결①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과 체결한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고, 판결②는 혼인신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의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이다. 만약 판결①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과 체결한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약정도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가 지적장애 여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면 이는 합당한 판결인가. 또한 판결②는 혼인신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의 혼인신고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등의 죄를 묻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정당한 판결인가.

전자는 지적장애인들의 의사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후자는 결과에서 있어서 지적장애인에게 부당하다는 점에서 각각 지적을 받을 것이다. 지적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줘도, 손을 들어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지적장애인에게 계약이나 거래의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의사소통조력인의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지점이다.

2. 발달장애인 노동착취에 관한 법원·검찰의 판단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 필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2020년 장애인노동착취 형사사건 분석 보고서(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노동력착취 사건 중 10건의 상담 기록, 수사 기록, 불기소 이유서 및 판결문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수사기관은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가해자를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노동력 착취가 아닌) 절에서 스님들이 힘을 합쳐 잡일을 하는 ‘울력’에 해당된다”(노원경찰서), “강제로 일을 시킨 적은 없으며 일손이 필요할 때 품앗이 개념으로 일을 도와준 것”(광주지방검찰청)이라고 불기소처분 이유를 밝혔다. 가해자들은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렸지만 미풍양속을 면죄부 삼아 법망을 피해갔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노동력착취와 학대에 대해 온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수사기관만이 아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2020년 10월에 발표한 최근 3년(2017년~2019년)간의 형사 판결문을 분석한 ‘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74.6%가 발달장애인이었고, 장애인학대 관련사건 775건 중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학대행위자는 3년간 고작 120명에 불과하였다. 이들 가해자의 51.4%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48.1%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 해도 신체적 학대는 형량이 평균 1년8월에 그쳤고, 성적 학대만 3년1개월여에 달했다.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에는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피고인 동료의 탄원서, 장애인복지 증진에의 기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먹여주고 재워줬다거나 감금, 폭언, 폭행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적장애인들은 자신이 학대나 착취를 당해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해도 대

응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학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더욱 쉽게 범행을 저지르는데 이런 정황이 도리어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을 가두고, 때리고, 굶기는 것 뿐만 아니라 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방치하는 행위가 모두 심각한 '장애인 학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장애인 학대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이 장애인 인식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장애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장애인학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중요하다.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3. 판례 만들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장애인 인권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권단체와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차별구제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행정소송을 계속해서 제기하여야 한다. 유사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받을 때에 법원 판사들도 좀더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또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장애인 피해당사자와 장애인단체가 지속적으로 고소·고발을 제기하여야 수사기관에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수사와 당사자 심문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사건을 접하게 되고, 장애인 피해사실에 대해 인지하게 된다. 설령 장애인 인권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례가 쌓이게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입법개선이나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민사든 형사든 지속적으로 법원과 검찰에 문제제기를 하고 장애인 인권에 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과 학대는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가 이를 계속 접하고 고민하면서 차츰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장애인 인권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제안

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7년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

지난 2006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성폭력문제 해결과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둔감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성폭력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법조인들의 성편향적인 사법관행 성찰과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촉구하는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뜻을 함께하는 법조인, 학자, 반성폭력활동가들의 참여로 매월 대법원 판례 평석을 발간하여 존엄, 정의, 고귀, 위엄, 그리고 여성의 색깔로 상징되는 자주색 봉투에 담겨 대법관을 비롯하여 헌법재판관과 전국 각 법원과 검찰청 등 800여곳에 배달되었다. 2006년 7월에 시작된 이 운동은 판례평석 이외에도 토론회, 언론기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2007년 6월까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펼쳐졌다.

이 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몇몇 법조인들은 이 운동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격려의 편지와 따뜻한 마음을 담은 후원금을 보내주기도 했고, 어떤 기관장은 소속기관에서 피해생존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하겠다며 상담소에 의견을 문의하기도 하였다. 이 운동이 진행된 이후 물리적 폭력이나 직접 협박을 동원하지 않은 정신적 압력에 의한 강간을 인정한 전향적인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고, 장애여성 성폭력에 관해서도 ‘항거불능’의 성립을 완화하는 판결도 내려졌다.

나. 장애인 인권침해 조장하는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제안

반성폭력운동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된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이 성폭력을 수사하는 검사와 이를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피해생존자의 목소리를 알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 메시지를 접한 이들은 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태도를 성찰하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한 작은 실천은 거대한 사회변화를 일궈냈다, 이러한 자줏빛 메시지는 세

상 속으로 퍼져나가 성폭력피해 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힘찬 울림이 되었다,

반성폭력운동 현장에서 제기한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이 결국 판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 것처럼, 장애인 인권현장에서도 “장애인 인권침해 조장하는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 운동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이를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피해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그러한 작은 움직임을 통해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 학대와 차별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성찰하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조금씩 장애인 차별의 현실을 바꾸는 작은 실천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종합토론>

사법 모니터링과 장애인단체의 역할

이 찬 우 사무총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회’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한 해 동안(이번에는 2019. 7.부터 2020. 12.까지) 선고된 판결 중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판결을 모니터링하여 그 내용과 영향에 따라 ‘디딤돌 판결’, ‘걸림돌 판결’, ‘주목할 판결’로 선정하고, 보고회를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사법 종사자의 장애 인권 감수성 제고에 기여하고, 법 앞의 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사법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디딤돌 판결은 장애인이 소송의 당사자이거나, 장애와 관련된 사안이 주요하게 다뤄진 판결에서 장애인 인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판례를 말하며, 걸림돌 판결은 이와 반대로 장애인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판례를 뜻합니다.

1. 개인적 소회

올해 처음으로 선정 작업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기간 내내 장애인의 ‘행복할 권리’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힘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살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이용당하거나 금전적 피해가 없는 평범한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 없이도 잘 살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사회생활은 사람들과 관계되어 살아야 하는 구조 속에서 부딪힘과 갈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로병사 즉 삶의 굽이굽이 모든 과정마다 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사회적 약자를 눈물 흘리게 합니다. 공정을 원하지만 공평이라는 허울에 힘들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법의 경계에 서게 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또는 관심조차 없었던 우리들의 문제를 반추하게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장애인들의 사례를 보며 속상하고 울분을 삭히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느낀 점은 장애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환경의 문제입니다. 즉 환경을 변화시키면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이 가능합니다. 환경의 요소로는 물리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장애에 대한 지식과 태도입

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법, 정책변화, 능력 개발,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장애의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담아야 한다는 이 사실이 현장에서 조금씩 인지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청각장애인의 면접시험 편의제공 의무위반, 뚜렛증후군의 장애판정 결정, 조현병의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 위법 등 그간 개인의 문제로 치부 되었던 사항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으로 장애를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를 잘 나타낸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장애인 콜택시의 지침 문제, 편의시설과 관련되어 건축물 구조부에 대한 엄격한 판단, 함포사격 훈련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진단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기각 등은 아직도 변화에 대한 체감도가 많이 떨어진 곳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산업재해나 보훈과 관련한 판결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완강한 성역 같은 분야에도 현실의 흐름을 순응하는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각지대 장애 영역인 정신적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많은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적장애인의 혼인의사결정 관련, 지적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등 유사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는 내내 법률 용어가 어려워서 완전한 이해는 어려웠지만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법을 모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이 우리를 보호하지만 무한의 보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모든 법을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우리의 권리를 보호받고 강조할 수 있는 법들은 꾸준히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사법 모니터링과 장애인단체의 역할

모니터링(Monitoring)이란 어떤 대상의 상태나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관찰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과 오류를 대비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저의 단어로 말하면 모니터링은 꾸준한 관심과 반응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여러 방법 중에서 모니터링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의 관심으로 발견이 되고 우리가 관심을 주지 않는 사건·사고들은 잊히기 마련입니다. 관심이 없어지는 순간 우

리의 권리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에 매섭게 질책하고 잘함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이 사회를 바른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여기에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전문분야로서 장애 감수성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법을 알아야 법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선한 잣대로 즉 장애 인권이라는 잣대로 재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의 협력은 큰 힘이 됩니다.

장애인단체의 가장 큰 장점은 회원의 근황을 가장 가까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원들의 동정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악하는 것하고 인권피해에 대처하고는 별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단체나 회원들이 인권의식과 피해구제에 대한 정보와 체감도가 낮다면 그 효력은 반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극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017년에 발행한 장애인 인권상담 사례집 2권(부록)에 장애인 인권 관련 주요기관 정보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장애인 인권 상담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8개 항목이 있는데 장애인단체는 없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전국에 실핏줄처럼 깔려있는 장애인단체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장애인단체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활동부터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①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스터디그룹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지키고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분야라는 선입견에 무관심하거나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권적인 관점을 정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방법 외에는 없는 듯합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때만 낭독되는 장애인인권헌장을 익히는 것을 시작하여 기본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CRPD), 장차법(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장애학과 관련된 스터디도 좋습니다. 이때 법을 전공한 선한 조력자와의 연계하고 사례를 공유하면서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인식이 형성됩니다.

② 장애인단체별 사법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연대활동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각 장애유형마다 특성이 있어 타 장애에 대한 상호이해가 더해진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사법과정에 나타난 특성들을 빅데이터화할 수 있다면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③ 더 적극적인 실천을 통한 사회변화를 위해 각 지방법원에서 시민사법모니터링단(부산법원, 시민사법참여단) 요원 모집에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의 참여 없이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행복할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 주변의 어려움에 외면하지 않는 기사도 정신도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는 기관과도 꾸준히 소통하는 채널도 필요하겠습니다. 인권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 있는 한 함께 공존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이고 우리 동료,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장애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삶을 만든다고 합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만들면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는 선한 법률가님들과 활동가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토론>

사법 모니터링과 장애인단체의 역할

김 혜 영 사무총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1. 들어가며

2021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회를 통해서 법체계 안에서 장애인의 기본권리 구현과 함께 인권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장애 분류 안에 의하면, 장애는 세 개의 차원으로 분류 됩니다. 제1차 장애는 impairment로 신체의 생리학적 결손 내지 손상을 뜻하며, 제2차 장애는 disability로 제1차 장애가 직접,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심리적 문제가 직접 간접적으로 발생할 경우의 인간적 능력이 약화 또는 손실되는 상태입니다. 제3차 장애는 handicap으로 제1차 장애와 제2차 장애가 통합된 형태에 다시 사회 환경적 장애(물리적 장애, 문화적 장애, 사회 심리적 장애)가 통합된 형태로 사회적 불리입니다. 즉 심리적, 정신적, 지적, 인지적, 발달적 혹은 감각적으로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에 문제에 있어,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거나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지칭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권리가 있음에도 몇 가지의 판결사례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부족 상황을 엿볼 수 있었고, 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장애운동을 통해서 인식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성장애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로서,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판결사례에 더욱 집중했는데, 정신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이 혼인신고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상태임을 인지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여성장애인을 간음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피해자인 지적 여성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자체를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고무적이나, 피해자의 장애정도 수준이라면 혼인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할 때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판단내용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위배되는 판단으로 보여 다소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법부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여성이면서 장애를 가진 이중적 고충의 사회적 약자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모든 수사과정 속에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여성 수사관이 참여하여 진행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판결에서는 임신한 상황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유해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여성 자신은 물론 태아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자인 여성만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수급권자로 받아들여지고,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장애아에 대한 요양급여 수급권은 인정되지 않은 판결인데, 모체에 임신된 태아의 생명존중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대한 심각한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었습니다.

앞으로, 장애를 가진 태아에 대한 생명존중의 권리와 인권이 보호되고,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 모체와 함께 동등한 법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체계의 변화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2. 사법 모니터링과 장애인단체의 역할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각종 폭력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피해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의 폭력피해가 발생하면, 먼저 위기개입에 대한 긴급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며, 관련기관과 시설연계를 통해서 긴급보호조치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전문상담기관인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의 기관을 통해서 상담과 의료 및 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과 보호시설 연계 등의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는 수사 및 법률지원도 담당하고 있는데 상담소와 연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통해서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계체계를 통해서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의 법률지원은 대부분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이 되는데, 가해자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선변호사가 다중의 사건을 맡고 있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피해 사건이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사법처리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최초 폭력 피해 가해자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바뀌는 상황..다중의 사건 처리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재판 날짜를 잊어버리고 불출석해서 피해자에 대한 법적구제가 늦어지는 상황..등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법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는 사법 모니터링을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재판과정 모니터링에 필수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에 여성장애인의 폭력피해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과 관계자들의 장애인식 부족으로 폭력을 가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온적이며, 비장애 남성이 여성장애인을 가해하였을 경우, 오히려 여성장애인이 피해를 유발한 것처럼 조사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여성장애인의 폭력피해에 대한 사법기관의 장애인식개선과 여성주의적 관점의 수사체계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피해와 같은 범죄행위가 적법하게 처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초기 수사 과정에서 부터 재판을 통한 판결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원스톱 사법 시스템이 필요하며, 사법기관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범죄 발생 시 장애인 당사자 관점으로 사건을 이해하려는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며, 피해 지원 기관의 재판 모니터링 인원과 참여횟수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피해 사건 발생 시, 장애 영역을 떠나서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 간의 솔루션 및 연대체를 구성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단합된 연대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가 억울하게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삶이 더 이상 장벽이 아닌, 권리로써 당당히 사회 속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고, 사법 체계 안에서 장애로 인해 인권과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장애당사자 중심으로 구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 O T E

N O T E

2021 장애인 인권
디딤돌 · 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발행일 2021년 5월 31일
발행처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후 원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연락처 (전화)070-7732-8734 (팩스) 02-2675-8675
홈페이지 http://cowalk.or.kr
이메일 human5364@daum.net